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2,198,000	12,065,940
일반회계	379,261,000	11,377,830
특별회계	22,937,000	688,110
기타특별회계	22,937,000	688,11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35,955	151,07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300,000	9,000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70,765	11,123
수질개선 특별회계	9,356,587	280,69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61,702	25,851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250,200	7,506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	6,210,705	186,321
치수사업 특별회계	551,086	16,5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66,20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65,94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